용당세관 공고 제2026-06호

2026년도 제1회 용당세관 공무직근로자(조리원) 채용
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2026년도 제1회 용당세관 공무직 근로자(조리원)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용 당 세 관 장

1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분야	응시번호	성명
조리원	260403	김OO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○ 대　　상 : 최종합격자
○ 기　　간 : 2026. 8. 13. (목) 09:00 ~ 8. 14. (금) 18:00
○ 장　　소 : 용당세관 조사심사과(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25)
○ 방　　법 : 방문
○ 최종합격자는 통보된 방문 등록일에 채용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채용포기서(붙임 5)를 작성하여 제출

※ 통보된 방문 등록일에 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이 경우에도 채용포기서는 제출하여야 함

○ 방문 등록시 제출서류

①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(붙임 1)
②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붙임 2)
③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붙임 3)
④ 공정채용확인서(붙임 4)
⑤ 상세가족관계증명서 1부
⑥ 상세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
※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, 전체사항 나오도록 발급
⑦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(3cm×4cm) 1부

3 채용관련 안내

○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, 합격 취소, 채용 포기,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,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의 사유 발생 시,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※ 방문 등록일(계약 예정일)은 인력 수급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※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그 외 채용등록, 계약포기, 계약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용당세관 조사심사과(채용담당 ☎051-793-71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붙임1 >

■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[별지 제12호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**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**①에서 "예"에 답변한 경우**, **다른 법률에서**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**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< 붙임2 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

< 붙임3 >

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성　　명:

생년월일:

위 본인은 20 년 용당세관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,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　년　　월　　일

확인자:　　(서명)

용당세관장 귀하

< 붙임4 >

공정채용확인서

본인은 용당세관에서 실시한 공무직근로자(조리원) 채용에 합격한 사람으로, 동 채용과정에서 본인과 친인척을 비롯한 타인에 의한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당·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,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: (서명)

용당세관장 귀하

< 붙임5 >

채용 포기서

○ 시험구분 :

○ 응시(등록)번호 :

○ 성 명 : ○ 주민등록번호 :

○ 주 소 : (우:)

○ 전화번호 : (지역) ()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직근로자로 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. . .

위 본인 (인)

용당세관장 귀하

※ 참고사항

1. 포기사유(예) : 학업계속, 기업체 취업, 개인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2. 반드시 자필로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